

# 심사보고서

【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678
----------	-----

2022. 3. 23.  
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3. 10. / 운영위원회
- 나. 회부일자 : 2022. 3. 11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3. 23.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시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 및 자구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괄 정비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관련 조례 4건 상위 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
  -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(안 제1조, 제5조)
  -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(안 제1조)
  -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(안 제1조)
  - 남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(안 제1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학철)
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조례의 인용 조문만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하여 명료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### 5. 토론요지

- 없음

### 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### 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붙임 :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.